

자율형 공립고 2.0
3차 선정 계획(안)

2024. 8.

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 1

II. 자율형 공립고 2.0 주요내용 2

III. 자율형 공립고 2.0 3차 선정 계획(안) 6

IV. 향후 추진일정(안) 10

[붙임] 1. 자율형 공립고 2.0 계획서 내 필수 기재 사항 11

2. 자율형 공립고 2.0 심사 기준(안) 12

I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추진배경

- (공교육 혁신) 디지털 대전환 및 학령인구 급감* 등에 따라,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교육력 제고 필수
 - * 학령인구(6~21세) 추이(23, 통계청) : (22) 750만 명 → (30) 597만 명 → (40) 412만 명
 -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이를 일반고로 확산시키는 ‘공교육 선도 모델’ 필요
- (지역교육 활성화) 지역소멸 위기*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력 개선이 시급
 - *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중 57%인 130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(24, 한국고용정보원)
 -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계기로, 학교가 지역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
 - ※ 자율형 공립고 2.0 1차 공모 결과 40교 선정, 2차 공모 결과 45교 추가 선정
 - 교육발전특구 1.2차 공모 결과 56건 지정·발표
- (군인 가족 지원) 격오지 근무 및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라 교육여건이 열악한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체감 가능한 지원 필요
 - ※ 직업군인 읍·면단위 근무비율: 50%,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: 79%
 - 교육부-국방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(' 24.3.11)하여 전국의 군인자녀를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율형 공립고 모델 개발·운영 추진

□ 추진경과

- 「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」 발표 (' 23.6.27)
- 자율형 공립고 2.0 기본계획 안내 및 선정 공모 (' 23.12.27)
- 자율형 공립고 2.0 1차 선정결과 발표 (' 24.2.29)
-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-국방부 MOU 체결 (' 24.3.11)

○ 자율형 공립고 2.0 추가선정 계획 안내 및 공모 (' 24.5.1~6.30)

○ 자율형 공립고 2.0 2차 선정결과 발표 (' 24.7.23)

II 자율형 공립고 2.0 주요 내용

< 자율형 공립고 2.0 운영 유형 >

- ① **계속**(지역 혁신형) 농산어촌·원도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개발·운영·확산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
 - ② **신규**(군인자녀 모집형)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 및 군인자녀의 특성·수요를 고려한 특화된 교육과정·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군인가족의 교육여건 개선
- ☞ **공통** 자체평가(학교) 및 위원회 평가(교육청)를 통해 주기적 성과관리

1. (계속)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 2.0

□ 개요

- (**개념**) 농산어촌·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·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학교
 - (**기본방향**) 지역별 다양한 상황·특성·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공고 2.0 모델을 창출하고,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(교육발전특구 연계 가능)
 - 지자체, 대학, 기업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·도별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에 기여
 - (**운영방식**) 지자체·대학·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교육혁신가와의 연계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모델 운영
 - 협약 내용의 이행 및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체하여 '협약·운영위원회' 운영
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특례 인정

※ 협약기관과 학교 운영 전반을 논의하여 교육과정 등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담당자를 협약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 필요

- ‘지원 및 특례사항’을 활용해 자율적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, 관련 내용을 지정·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학교·교육과정 운영

□ 지원 및 특례사항

① 예산 및 운영 지원

- **(예산)** 교육부·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한 총액 단위 예산(연 2억원) 지원
 - ※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원, 시·도교육청 대응투자금 1억원
 - 단, 질 관리를 위해 매년 교육부·교육청의 계획서 모니터링 후 예산 교부 예정
- **(컨설팅)** 교육부, 시도교육청,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자공고의 학교·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·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
 - ※ 희망하는 경우 자공고 2.0 모델 수립 과정 중 교육부 등에서 컨설팅 제공 가능

② 학사 및 교육과정 특례

- **(학사운영)** 무학년제, 조기입학·조기졸업,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 특례
 - * 적용 및 지역 전문가·대학 교원과 협력 수업 등 가능
 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1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적용 가능
- **(교육과정)** 특목고·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*하고 협약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신설 및 운영 허용
 - *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(예술 교과(군)는 5학점 이내, 기술·가정/정보/제2외국어/한문/교양 교과(군)은 4학점 이내)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 가능
 - 교육과정 자율화 범위 확대 요청 시, 추가 자율권 부여 가능
 - ※ (2022 교육과정) “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... 운영할 수 있다.”

③ 교원 및 학생 관련 특례

- **(교원 인사)** [교장] 교장공모제*를 통한 교장 임용, [교사] 교사 100% 초빙 및 교육감 재량범위 내에서 교사 추가배정 가능
 - * 훈령에서 규정한 사유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장공모제 1년 내외 유예 가능(유예 여부·기간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)

※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을 통해 교장 공모제한 완화 추진 중

- **(학생선발)** 학교가 소재한 광역지자체 단위로 모집하되, 필요시 학교 소재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단위로 우선선발 가능

④ 추가 지원사항

- **(제도 개선)** 자율형 공립고 2.0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·도의 자율적 교육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추진

2. **(신규)**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.0

□ 개요

- **(개념)**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*하며, 군인 자녀의 특성·수요를 고려한 특화된 교육과정·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
 - * 「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」(이하 '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') 제4조 제3항
- **(기본방향)** 기존 ‘군인자녀학교*’ 로 운영 중인 한민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개발·운영하여 군인 가족의 교육여건 개선
 - * 「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」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
 - 전국 각지의 군인 자녀를 모집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,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지원을 통한 충분한 기숙사 확보 필요
- **(운영방식)** 선정교를 군인자녀학교로 지정하고, 한민고와 (가칭) ‘군인자녀 학교 컨소시엄’ 을 구성하여 특화된 교육과정·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(군인자녀학교 지정) 선정교를 군인자녀학교로 예비 지정하고, 「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」 개정* 이후 ‘군인자녀학교’ 로 지정 확정
 - * (예시)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군인자녀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(「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」 제3조)
 - (컨소시엄 구성·운영) 선정교와 한민고 간 협약을 체결하고, 협약·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특화된 교육모델 개발 추진*

* (예시) 특화형 교육과정 개발, 합동 체육행사 등 학교 연합활동 개최, 교원 합동연수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, 한민고-자공고 간 교사 상호 파견 등

※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한민고에 연 1억원(특별교부금) 지원 예정. 단, 해당 예산은 컨소시엄 프로그램 운영 등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한해 활용 가능

- (전국 단위 모집) 입학전형 일정 및 기숙사 신·증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'26년부터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 실시

※ ('25) 특화형 교육과정 등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 모델을 사전 개발·도입하는 '시범운영 기간'으로 활용 → ('26) 「군인자녀학생모집 규정」 개정사항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

□ 지원 및 특례사항

○ ①예산·운영 지원, ②학사·교육과정 특례, ③교원 및 학생 관련 특례, ④제도 개선 지원 등은 일반형 자율형 공립고와 동일하게 적용

○ '군인자녀학교' 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('26.~)하며, 국방부의 추가적인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* 예정

* (예시) 기숙사 운영 예산, 각 군 사관학교와 연계한 학습활동, 지역 내 부대와 연계한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등

3. (공통) 성과관리

□ 운영성과 관리

○ **(자체평가)**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중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하여 학교 자체적인 운영성과 제고

- (주요지표) 교육과정 다양화·특성화 여부, 교수학습방법, 교원능력개발, 학생·학부모 만족도 등 정량·정성요소를 복합적으로 평가

- (행정사항) 학교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

※ 학교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필요(훈령 제13조)

- **(위원회 평가)** 교육감 소속 자율학교 등 지정·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
 - (주요내용) 지정기간 종료 **6개월 전***까지 서면·현장평가, 학생·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 결정
 - ※ 자공고 운영성과평가지표 신규 개발·안내 예정(~24.9)
 - (행정사항)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

III 자율형 공립고 2.0 3차 선정 계획(안)

1. 모델별 선정 개요

1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 2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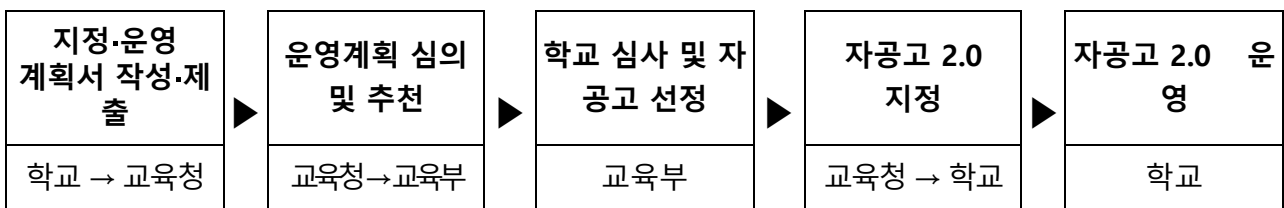
- **(신청대상)** 전국 공립 일반고등학교 및 기존 자율형 공립고 中 협약에 기반한 자율적 교육혁신을 희망하는 학교
 - 원도심·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소재 학교를 우선 고려하되, 시·도별 여건·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이외의 학교도 신청 가능
- **(신청기간)** ' 24.8.19.(월) ~ 10.30.(목)
- **(선정규모)** 총 20교 내외
 - ※ 신청 수요, '25년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**(결과발표)** ' 24.11월 중순 예정
- **(운영기간)** ' 25.3.1. ~ ' 30.2.28. (5년)

2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.0

- **(신청대상)** 전국 공립 일반고등학교 또는 기존 자율형 공립고 中 특
화 교육과정 개발·운영 등을 통해 군인 가족의 교육여건 개선을 희
망하는 학교
※ 신청 전 교육부-국방부와 사전협의 필요(교육부-국방부 현장실사 예정)
- **(신청기간)** ' 24.8.19.(월) ~ 9.30.(월)
- **(선정규모)** 총 2~3교 내외
※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 수요 전망, '26년 이후 가수요 등을 고려한 규모로 추가 선정또는 선
정 규모 변동 불가
- **(결과발표)** ' 24.10월 중순 예정
- **(운영기간)** ' 25.3.1. ~ ' 30.2.28. (5년)
※ 시범운영('25.3.1.~'26.2.28.)을 거쳐 '26.3.1부터 본격적인 전국 단위 모집 실시

2. 선정 절차

< 선정 절차 개요 >



- ① **(학교→교육청)** 자율형 공립고 2.0 지정·운영계획서(요약서 포함)*를 작
성하여 교육청에 제출
* (주요내용) 학교 운영 계획서(학교발전 계획 등 포함), 주요 협약기관 및 협약내용, 교육
과정 운영계획서, 입학전형 계획, 교직원 배치 계획, 학교 헌장 등
- (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) 지자체·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
친 기숙사 등 시설투자 계획도 함께 제출
- ② **(교육청)** 시·도별 ‘자율학교 등 지정·운영위원회’ 를 통해 학교의
지정·운영계획서를 심의*하고, 교육부장관에게 추천
* 계획서 내 필수 기재 사항(붙임1)의 기재 여부 등 확인 필요

※ (추천 시 제출내용) 학교별 지정·운영계획서(요약서 포함), 자율학교 등 지정·운영위원회 회의록, 시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

③ **(교육부)** ‘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’ 를 통해 시도별 추천 학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 2.0 운영학교 선정

- (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) 자율형 공립고 **2.0** 선정과 함께 ‘군인자녀학교’ 로 예비 지정(또는 이에 준하는 우선 지정) 예정

* 「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」 개정 후 ‘군인자녀학교’로 최종 지정 예정

④ **(교육청)**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된 학교를 자공고로 지정

※ 교육청은 자공고 2.0 선정 학교를 연구학교로 필수 지정,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금 교부·교장공모 등 운영 지원

⑤ **(학교)** 지정·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자공고 **2.0** 운영(지정 후 5년 간)

3. 선정 심사

□ 심사 기준

○ (공통) 자율형 공립고 **2.0** 운영을 위한 협약과 이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변화, 교직원 배치 등 학교 운영 전반 확인

-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협약에 기반한 학교 운영체계의 변화,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

○ (군인자녀 모집형) 공통 기준에 더하여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위해 **6**가지 요건을 추가 심사

<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.0 지정 요건(안) >

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숙사 운영

② 지자체·교육청·학교의 참여 의사

③ 군인자녀 모집 명분 및 상징성

④ 학생 수용 규모(학년당 150~330명)

⑤ 우수 교원 모집 여건

⑥ 접근성(교통 편의성 등)

- 아울러, ‘군인자녀학교’로서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‘전체 정원 중 군인자녀 모집 비중 **50% 이상**’ 충족* 필요

* 단, '25년은 기숙사 신·증축 등 일정을 고려하여 모집 비중 50% 이상을 목표로 군인 자녀 모집 비중 확대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

□ 심사결과 구분

-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에 따라 ‘선정’, ‘조건부 선정’, ‘미선정’ 으로 구분하여 결과 발표

< 총점별 선정 기준(안) >

총점 기준(점)	선정 내용	비고
70점 초과~	可(선정)	
40점 이상~70점 이하	조건부 可(조건부 선정)	조건 이행을 전제로 선정 (미 이행시 철회 가능)
~40점 미만	不(미선정)	

※ 조건부 선정교의 최종 선정 여부는 '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'에서 심의의결

4. 신청 시 유의사항

- **(협약체결)** 자율형 공립고 2.0 지정을 신청하는 학교는 지자체·대학·기업 등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, 신청서에 이를 반영

- 협약의 내용은 단순한 업무 협력이 아닌, 실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필요

- **(교육과정)** 지역과 협약기관의 여건·특성 및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각종 활동 편성 필요

※ 협약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신설·운영 시, 국가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 준수 필수

- **(교육발전특구 연계)** 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지정·운영과 연계하여 계획 제출 시 교육발전특구의 취지에 맞는 연계 계획 작성 필요

-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 2.0의 교육혁신 모델과 교육발전특구의 지원내용 등 명시
- 아울러,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.0 계획서에 연계 여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관 간 충분한 사전 소통·계획 공유 필수

○ **(행정사항)** 협약의 취지에 따른 공모 교장 임용 계획, 교육청별 연구학교 지정 계획 등 훈령 상 필수 요건* 이행계획을 신청서에 반영

* 「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7조, 제12조 등

- 교장공모 유예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지정 신청을 하는 현임 교장이 추후 해당 자공고 교장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정 신청서에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

※ 공모 실시 유예 여부 또는 현임 교장의 해당 자공고 교장직 응모 가능 여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 (단, 자공고로 재지정된 경우를 포함해 현임 교장의 해당 자공고 교장직 응모 허용은 해당 학교가 자공고로 최초 지정된 후 실시하는 1회차 교장 공모로 제한)

IV 향후 추진일정(안)

- 자율형 공립고 2.0 3차 선정 공모 (8.19~10.30)
 - ※ 지역 혁신형 : 8.19~10.30 / 군인자녀 모집형 : 8.19~9.30
-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(10월 초)
-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선정결과 발표 (10월 중)
- 자공고 2.0 3차 선정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(11월 초)
- 자공고 2.0 3차 선정 결과 발표 (11월 중)
- 자공고 2.0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(12월, 잠정)

붙임1

자율형 공립고 2.0 신청계획서 내 필수 기재 사항

필수 기재 사항

구분	계획서 내 필수 기재 사항	관련 근거
교원인사	▶ 교장공모(유예기준 내 공모) 및 교원초빙(특화모델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) 계획 구체화	훈령 제7조
연구학교	▶ 연구학교 지정 여부·기간, 지정주제 명시	훈령 제12조
협약	▶ (협약서) 자공고 2.0 모델에 부합하는 중점협약기관과의 협약서 최종 제출	훈령 제10조
	▶ (위원회) 협약 취지에 맞는 중점협약기관과의 협약·운영위원회 구성(위원명단)·역할·운영계획 구체화	훈령 제10조
	▶ (교육과정) 협약 취지에 맞는 '25년 교육과정 계획(예시) 및 자율화 9학점 활용방안 명확화	추진방안
	▶ (예산) 협약에 따른 학교 운영 방향에 맞는 예산 집행 계획(안) 제출	추진방안
교원연수	▶ 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교원 연수 및 능력개발 계획 - 특화 모델 운영을 위한 교원의 교과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계획 내실화 및 보완 제출	훈령 제11조
예산	▶ 필연성이 '충분히' 입증되지 않은 모든 해외 연수·탐방·체험 지양, 자공고와 별개일 경우 계획·예산에서 삭제 ▶ 특교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계획 개선(참고: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-4624, 2024.5.24.)	기타 (선정위원회 안내 등)
기타	▶ 관련 법령, 지침, 기본계획, 교육부 선정위원회 심의 시 제언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계획 보완	

붙임2	자율형 공립고 2.0 심사기준(안)
-----	---------------------

공통 기준(안)

심사영역	배점	주요 심사 항목(안)
학교 운영계획	40	▶ '자율형 공립고 2.0'의 취지에 대한 학교의 이해도*
		▶ 협약을 통한 학교 운영 방안*
		▶ 학교 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
		▶ 학교 구성원의 '자율형 공립고 2.0' 추진 공감대 및 의지
		▶ 학교 경영의 건전성 및 교육여건 개선 계획
교육과정 운영계획	20	▶ 교육과정 목표 및 편성·운영 계획의 타당성·적절성
		▶ 교육과정의 특성화·다양화 계획
		▶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개선 계획
		▶ 협약기관과의 연계·협력을 통한 교육활동 개선 방안*
입학전형 실시계획	10	▶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
		▶ 사교육비 유발 가능성(비평준화 지역)
교(직)원 배치계획	10	▶ 교직원 배치 등의 타당성(교장공모제 등 포함)
		▶ 교직원 대상 연수 등 전문성 강화 방안
기타 고려사항	20	▶ 지역 내 자공고 2.0 운영의 필요성(교육소외지역 등)
		▶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방안
		▶ 계획서 전반을 통한 학교 운영 제반사항*
총점	100	16개 항목

* 중점 고려사항

□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.0 대상 추가 기준(안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숙사 운영 | ② 지자체·교육청·학교의 참여 의사 |
| ③ 군인자녀 모집 명분 및 상징성 | ④ 학생 수용 규모(학년당 150~330명) |
| ⑤ 우수 교원 모집 여건 | ⑥ 접근성(교통 편의성 등) |